



# 가정통신문

부서담당: 중등진학부장  
전화번호: TEL: 021) 6493-9538  
FAX: 021) 6493-9600  
홈페이지: <http://skoschool.com>

中国 上海市 闵行区 华漕镇 联友路 355号 (邮)201107

## 2021학년도 「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」 운영 권고사항

본 권고사항은 코로나19(COVID-19)의 국내외 확산으로 인하여 「2021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」에 따른 각 대학의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(수시.정시)의 운영계획에 관한 안내입니다.

### □ 검토 배경

- 코로나19의 국내외 확산으로 재외국민·외국인 특별전형의 자격요건 충족, 전형응시를 위한 입국 등 전형기간 전 사전대처 필요
- 특히, 서류제출·대면전형(면접·에세이 등)을 위해 귀국이 필요한 경우, 국경통제·항공편 제한 등 출입국이 어려운 수험생의 불편 예상
- ※ 6.24. 10:00 현재 코로나19로 139개국 이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(「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」,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)

#### < 대학 주요 건의 사항 >

- ▶ 코로나19로 인한 수험생.보호자의 해외체류기간, 재직기간 산정 기준 필요
- ▶ 각종 해외체류.재직기간 산정 예외 증빙서류에 대한 공신력 확보 필요
- ▶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등 자격요건 시험의 연기.취소 상황에 대한 대책
- ▶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전형 진행, 전형요소 변경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입전형시행계획 또는 모집요강 개정 필요

### □ 재외국민·외국인 전형 운영 권고사항

- (비방문 원서접수 안내)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를 방문접수로만 요구하거나 비방문접수에 대한 안내가 없는 대학은 이메일·국제우편을 통한 제출을 허용하고 해당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안내
- (자격시험) 어학시험 연기·취소 등 사유 발생 시 성적표 제출 시한 연기, 사후시험 인정, 졸업요건 대체 등 수험생 피해 최소화 조치 강구
- (한국어능력시험) 최소 제70회 시험(7.12. 응시, 8.20. 성적발표)까지 성적을 인정하고, 성적은 사후제출(8.20. 이후)하도록 수험생에게 안내
- ※ 코로나19 확산상황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의 개최일정 추가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, 대학별 계획에 따라 제70회 이후의 성적도 인정할 수 있음
- (온라인 수업)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 시, 체류국가와 관계없이 재학기간 인정(단, 해당기간 국내 체류 시 해외체류기간으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, 예외인정(참작)사유

중방 시 해외체류기간을 인정할 수 있음)

- (제출서류 사후제출) 응시자가 현지 사정에 의해 서류발급·제출이 어려운 경우, 최초합격자 발표일 이전까지 서류제출기간 연장
  - ※ 대학별 행정절차, 서류평가 진행 등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제출기한은 대학 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 가능
- (귀국 시 자가격리) 특별전형 접수·응시를 위해 귀국하여 14일 자가격리를 시행하는 경우, 자가격리\* 기간을 해외체류기간으로 인정
  - \* 격리기간 : 입국일로부터 만14일이 되는날(입국일 D+14)의 24:00까지 (예시 - '20.7.1. 입국한 경우 만 14일이 되는 '20.7.15. 24:00까지 해외체류기간으로 인정)
  - 격리에외자는 능동감시 기간을 해외체류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
- (대면전형운영) 대면전형(면접·실기·지필 등) 운영 대학은 수험생 출입국 가능여부, 전형취지, 방역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면전형을 운영하며, 수험생 간 유·불리가 발생하는 전형운영·변경은 지양
  - (원격 전형 진행) 원격(온라인 등)으로 운영하여 대학이 공정성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대면전형요소는 원격으로 실시 가능
    - ※ 원격으로 전형 진행 시 수험생 간 형평성·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내에 입국하여 대면으로 진행이 가능한 수험생도 원격으로 전형 실시 권고
- (지원요건 판단 자율성 부여)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학의 수험생·보호자의 ▲해외체류기간, ▲재학요건, ▲재직요건 예외인정 판단사항은 교육부 감사 시 참작

#### □ 향후 계획(안)

- (특별전형 변경사항 통보) 재외국민·외국인 특별전형 운영내용 변경 시 대교협에 변경 내용을 통보(대교협 별도 안내시까지)
  - ※ 변경 내용에 따라 대교협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대교협 심의 후 결정
- (집합평가 방역 가이드라인 마련) ▲수험생 인원 및 배치 원칙, ▲시험장 방역관리, ▲수험생 준수사항 등 제공

⇒ 재외국민·외국인 특별전형을 포함하여 수시전형, 정시전형 등 집합평가 시 사전에 대학이 준비할 수 있도록 '대학 방역 가이드라인'을 7월 내 제공

2020. 07. 07.

**상 해 한 국 학 교 장** (직인생략)